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5. 26 선고 2022가단313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2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. 6. 17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에 대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. 망 D이 2019. 10. 3. 사망하였는데, C은 무자력 상태임에도 2020. 6. 17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.

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박성만

별지